

신한투자증권계좌거래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간의 하나의 계좌(이하 신한투자증권계좌'라고 합니다)로 위탁자거래, 수익자거래, 저축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관계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신한투자증권계좌의 등록)

- ① 고객이 신한투자증권계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한투자증권계좌거래약관의 내용을 동의하고 신한투자증권 계좌개설신청서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비대면 계좌 개설의 경우 거래인(서명)감 생략이 가능합니다.
- ② 고객은 신한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주식, 채권, RP, CD, CP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증권, 선물/옵션, 증권저축, 국내뮤추얼, 외국뮤추얼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품(펀드)매매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제 3 항의 상품매매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화 또는 방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며, 그 내용을 녹음유지 합니다.

제 3 조 (실명확인)

- ① 고객이 계좌개설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 ② 고객이 계좌개설 후 추가로 계좌 내 다른 상품의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계좌개설 명의인과 동일인임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신한투자증권 카드 및 통장의 사용)

- ① 회사는 고객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 및 통장을 교부합니다.
- ② 신한투자증권 카드 및 통장은 '고객 거래계좌의 예탁자산 인출', '제반 업무처리 신청', '회사의 계좌간 이체',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의 이체'등의 업무처리에 사용됩니다. 카드는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 ATM)기를 통한 출금, 이체 및 잔고조회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하며, 통장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통장정리, 입금, 출금 업무처리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5 조 (비밀번호 사용)

- ① 고객이 회사와 거래하면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와 "시크리트카드"로 구분됩니다.
- ② 계좌비밀번호는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써

회사지점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이며, 동일한 숫자, 연번,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등 타인의 추측이 용이한 번호체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③ “시크리트카드”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하여 시크리트카드 사용신청등록을 할 때 또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로써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업무처리(주문, 이체 등)하는데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제 6 조 (거래인(서명)감의 등록)

- ① 고객은 거래인감과 서명감을 모두 등록한 경우, 고객이 행하는 모든 거래 시 인감과 서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정한 업무절차에 필요한 경우에 거래인(서명)감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거래인(서명)감·비밀번호의 관리)

- ① 고객이 회사에 제반 업무처리를 신청하실 경우 사용하는 거래인(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는 최종 등록된 거래인(서명)감 및 비밀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의 거래인(서명)감 및 계좌비밀번호는 지점에 방문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등록한 거래인(서명)감, 모든 비밀번호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④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8 조 (현금·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 ① 신한투자증권계좌에 입금(출금)할 경우 고객은 입금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예수금으로 자동 입금(출금) 처리되며,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품별로 입금(출금)처리 됩니다.
- ②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현금의 경우 입금 즉시, 수표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추심하여 결제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 ③ 제 2 항에서 규정한 수표 등을 입금한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 등이 부도처리 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납하여 그 입금거래를 취소합니다.
- ④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으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당해 증권을 출고처리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 ⑤ 고객은 소정의 청구서에 거래인감(서명)감을 날인하고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한투자증권카드(통장)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신한투자증권계좌내의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체서비스 및 CD/ATM 기 이용)

- ① 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은행을 통한 계좌의 입출금서비스(이하 '이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 ② 이체서비스에 의해 입금 또는 출금되는 예수금은 위탁예수금으로 처리되며, 입금 후 증권을 매수하거나, 타계정으로 예수금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점으로 유선 연락하여 후속업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③ 기타 동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체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제 10 조 (온라인거래서비스 이용)

- ① 온라인거래서비스란 고객의 PC 나 전화 등으로 매매주문, 계좌정보조회, 투자정보조회, 이체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거래서비스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그 밖의 온라인거래서비스 이용에 따른 약정사항은 별도의 "온라인거래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부가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통지)

① 회사는 월간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 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다음 각호의 1 의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 하는 방법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 회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 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 2 항 이외에 감독기관의 지시 등 필요한 경우 월간거래내역 또는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만원 이하이고 최근 6 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 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신청서 기재내용 변동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신한투자증권계좌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매매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 16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할 수 있다.

제 18 조 (거래제한)

①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되거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회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장의 협조 공문을 근거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입.출금(고) 등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19 조 (약관의 적용)

①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있어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고 서비스 이용상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약관은 2003 년 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본 약관 시행전에 기존의 종합계좌약관 및 현금카드규약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7 년 12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02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08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09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3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4 년 07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5 년 12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7 년 09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0 년 0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1 년 0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2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3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4 년 08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25 년 06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